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2043 제출연월일: 2024. 7. 22.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사기업체 및 공·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하며, 채용·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2호)의 의결을 전제로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본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9조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의2, 제33조의3"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5까지"로,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37조의2"로 한다.

법률 제20280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9조의2제 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16조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제33조의3제2항 및 제37조에 따른 취업지원시기관에 대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 및 취업지원실시기관의 통보 내용 확인에 관한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우선고용의무 위반자 명단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5제2항은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이후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채용 의무나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우선고용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16조(취업지원) ① ~ ③ (생 제16조(취업지원) ① ~ ③ (현행 략) 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취업지원을 할 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 「국가유공자 등 예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제29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제29 조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 조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 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 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 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 32조, 제33조, 제33조의2부터 제 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 33조의5까지-----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 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 조제2항ㆍ제3항 및 제39조를 준 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가구 당 3명(취업지원 대상자 중 독 립유공자와 그 배우자는 3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에게만 취업 지원을 한다. 법률 제20280호 독립유공자예우 법률 제20280호 독립유공자예우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 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 에 관한 자료, 국세 · 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 · 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에 관 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 5. (생략)
- 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

7 ~ 12. (생 략)

• •	14.	(0	1 /
2 ~	4	(생	략)

(1)

- 1. ~ 5. (현행과 같음)
- 6. 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른 취 6. 제16조제4항 본문에서 준용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제33 조제2항, 제33조의3제2항 및 제37조에 따른 취업지원실시 기관에 대한 취업지원 대상자 의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 및 취업지원실시기관의 통보 내용 확인에 관한 사무
 - 7. ~ 12.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